

正 誤 表

頁	條	項	誤	正
11	12	3	受益分收	受益分配
42	8	2	期	次 期
45			(西紀一九六一年十二月二十一日)	(西紀一九六一年十二月三十一日)
45	1	本文	하므로써	함으로써
46	3	2	鳥獸의 알(卵)	保護鳥獸의 알(卵).
54	29	本女	拘留또는	罰金이나 拘留또는
55	附則		第一條	①
//	//		第二條	②
//	//		第三條	③
//	//	①	本法의 施行日은 閣令으로 定한다	本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59			砂防事業法	砂防事業法(西紀一九六二年一月十五日 字法律第九七七號)
63	18		① ②	削 除

63. 29

62. 29

634.9036
L293人

GOVP1197011456

山 林 法

附
錄

狩 獵 法
砂 防 事 業 法

寄贈	
山林部	寄贈本
二十二年十月廿一日	

혁 명 공 약

一、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 정비 강화한다

二、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유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三、이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시풍을 진작시킨다

四、철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에 총력을 경주한다

五、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수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六、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들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目次

第一章	總則	七
第二章	營利의 助成及監督	九
第三章	保安林及採種林	一三
第四章	國有林	一八
第五章	山林의 保護	二三
第六章	山林契、山林組合、山林組合聯合會	二五
第七章	罰則	三八

附錄

狩獵法
砂防事業法

山 林

法

(西紀一九六一年十二月二十七日)
法律 第八八—一號

第一章 總 則

第一條(目的) 本法은山林에關한基本原則을定하여 山林의保護育成과山林資源의增進을圖謀하며 國土의保存과國民經濟의發展에寄與함을目的으로한다

第二條(山林의定義) ①本法에서山林이라함은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것을말한다 但農地、住宅地、街路、其他閣令으로定하는土地와林木은除外한다

一、集團的으로生育하고있는木竹과그土地

二、前號의土地를除外하고木竹의集團的生育에使用하게된土地

三、集團的으로生育한木竹이一時喪失된土地

②山林이아닌山岳原野其他에對하여도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本法의全部또는一部分의規定을準用할수 있다

第三條(山林의區分) 山林은그所有者에따라다음과같이區分한다

一、國有林、國家가所有하는山林

二、公有林、地方自治團體其他公共團體가所有하는山林

三、私有林 前二號以外的山林

第四條(山林所有者의 定義) 本法에서山林所有者라함은正當한權利에依據하여山林을所有하여育成할수 있는者를말한다

第五條(權利義務等의 承繼) 本法또는本法에依據하여發한命令의規定에依하여생기處分節次其他의行爲는山林所有者 正當한權利에依하여山林의林木竹의使用收益을할수있는者와土地所有者또는占有者의承繼人에對하여서도그效力을가진다

第六條(職權의 委任) 農林部長官은本法에서規定한그職權의一部를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 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에게委任할수있다

第二章 營林的助成과監督

第七條(山林의基本計劃) ①農林部長官은山林生産의發展을圖謀하며山林施業의合理化를期하기爲하여

一定한期間을定하여山林基本計劃을作成하여야한다

②山林基本計劃의原則、期間、事業內容其他必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③農林部長官은山林의狀況또는經濟事情의顯著한變更으로因하여山林基本計劃의施行이困難하다고認
定할때에는山林基本計劃의一部를變更또는廢止할수있다

④農林部長官은第一項또는第三項의規定에依하여山林計劃을作成、變更또는廢止하였을때에는遲滯없
이서을特別市長또는道知事에게指示함과同時に 그概要를告示하여야한다

第八條(營林計劃) ①公有林또는一團地百町步以上の山林所有者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山林經營計

劃(以下營林計劃이라한다)을作成하여서을特別市長또는道知事の認可를받아야한다 이를變更하거나
廢止할때에도또한같다

②第七十三條의規定에依하여設立된山林組合은前項의規定에依한山林을除外하고組合區域内の私有林
을綜合하여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營林計劃을作成하여서을特別市長또는道知事の認可를받아야한다

이를變更하거나廢止할때에도 또한 같다

③前項의規定에依하여認可를받은營林計劃에關係된山林所有者는 그計劃의定한伐採、造林其他施業要件에依據하여施業을하여야한다

④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는營林計劃의施行上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第一項과第二項의規定에依한山林所有者또는山林組合에對하여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技術者の雇을을命할수있다

第九條(伐採의許可等) 山林所有者와立木竹을所有 使用또는收益할수있는者는立木竹의伐採、其他營林計劃의定한施業을實行하거나實行할때에는農林部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 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の許可를받아야한다

第十條(營林計劃決定前의施業命令) 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는第八條第一項및第二項의規定에依한營林計劃이決定되지아니한山林所有者와正當한權利에依하여立木竹을所有使用또는收益할수있는者에對하여閣令의定하는바에따라造林其他管理方法을指示하는命令을發할수있다

第十一條(營林計劃決定前의伐採와開墾) 第八條第一項및第二項의規定에依한營林計劃이決定되기前에山林內에서立木竹을伐採하거나山林을開墾하고자할때에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 主務官廳의許可를받아야한다

第十二條(施業의代執行等) ①山林所有者가第八條第三項과第十條의規定에依한施業要件에違反하여 施

業하거나林業을하지아니할때에는서울特別市長 또는道知事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 伐採其他施業의 停止를命하거나山林契 또는山林組合으로하여금이를代執行하게하고 그費用을山林所有者에게 負擔하게 할수있다

②山林所有者는前項의費用을優先辯償하여야하며辯償을하지아니할때에는第五十九條의 規定에依한受益分配契約을締結한것으로看做하고山林契 또는山林組合은그受益으로이를充當한다

③前項의 規定에依한受益分收의期間과比率其他必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第十三條(經費의補助와公課金の免除) ①本法에서規定한山林計劃、營林計劃의作成、變更 또는施行에 關하여 必要한經費에對하여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 그全部 또는一部를國家에서補助할수있다

②本法에서規定한營林計劃에依하여 새로이造林을實施하는山林에對하여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一定한期間公課金を免除한다

第十四條(保護林區의設定) 農林部長官은地域적으로林相을復舊하기爲하여 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一定한地域과期間을定하여保護林區를設定하고林木의伐採와落葉 樹根의採取를禁止 또는制限할수있다.

第十五條(造林用種子와苗木의檢査) ①造林用種子 또는苗木의販賣를業으로하는者는閣令의依하는바에依하여檢査를하여야한다

② 前項의 販賣를業으로하는者의 資格에 關하여는 閣令으로 定한다

③ 第一項의 造林用種子 또는 苗木의 販賣業者는 그 販賣하는 種子 또는 苗木에 對하여 閣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品質保證票을 添附하여야 한다

④ 農林部長官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指定한 公務員으로 하여금 造林用販賣種子 또는 苗木을 檢査하여 不良한 種子 또는 苗木의 販賣를 禁止하거나 沒收한다

第十六條(林産物의 使用制限) 農林部長官은 山林行政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林産燃料 및 木材使用을 禁止 또는 制限할 수 있다

第十七條(林産物의 檢査) 農林部長官은 山林行政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林産物의 規格을 定하여 檢査를 할 수 있다

第三章 保安林과採種林

第一節 保安林

第十八條(保安林의指定) 農林部長官은 다음各號의目的을達成하기爲하여必要하다고認定할 때에는當該山林을保安林으로指定할수있다

- 一、土砂의流出、崩壞의防備
- 二、飛砂의防備
- 三、水害、風害、潮害또는雪害等の防備
- 四、水源의涵養
- 五、魚類의誘致增殖
- 六、航海、航空目標의保存
- 七、公衆의保護
- 八、名所또는古蹟其他風致의保存

九、落石、火災의防備

第十九條(保安林의解除) 農林部長官은公益上必要하다고認定할때 또는保安林으로存置할必要가없다고認定할때에는保安林의指定을解除한다

第二十條(保安林의指定 또는解除에對한異議申請) ①保安林의指定 또는解除에對하여利害關係가있는地
 方自治團體의長 또는그指定이나解除에對하여直接利害關係가있는者는農林部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異議申請을할수있다

②前項의異議申請은告示가있는날로부터三十日以內에異議의理由書를添附所管 서울特別市長 또는道知事를經由하여農林部長官에게提出하여야한다

第二十一條(保安林豫定地에對한通知等) ①農林部長官은保安林을指定 또는解除하고자할때에는 그趣旨와保安林豫定地 또는解除豫定保安林의所在地其他農林部令으로定하는事項을山林所有者와所管서울特別市長 또는道知事에게通知하고이를告示하여야한다

②農林部長官은第一項의告示가있는날로부터五十日을經過한後가아니면保安林의指定 또는解除에對한決定을하지못한다

第二十二條(保安林豫定地에서의制限) 서울特別市長 또는道知事는前條의規定에依하여告示한保安林豫定地에對하여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一定한期間立木竹의伐採、土石、樹根의採掘 開墾其他土地의

形質을變更하는行爲를禁止 또는制限할수있다

第二十三條(保安林의指定 또는解除의告示와通知) ①農林部長官은保安林을指定 또는解除하는境遇에는

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 그事實을告示하고山林所有者(그處分이第二十條의異議申請에依한것인 때에는 그申請者)에게通知하여야한다

②保安林의指定 또는解除는前項의告示를한날로부터 그効力이發生한다

第二十四條(保安林內에서의制限) ①保安林의區域內에서農林部長官의許可를받지 아니하고는 立木竹의

伐採、土石、예 樹根、草根、生枝、落葉、松脂、樹皮의採取 또는採掘、家畜의放牧 또는開墾其他土地의形質을變更하는行爲를하지 못한다

②農林部長官은前項의許可申請이 있을 때에는 그申請의內容이保安林을指定한目的의達成에 障害가된다고認定되는境遇를除外하고는 이를許可하여야한다

第二十五條(損失補償) ①國家는保安林에關하여前條의規定에依한許可를받지 못한者에對하여는 그行爲의制限으로因하여 그者가普通받을損失을補償하여야한다

②保安林의土地나立木竹에對하여質權 또는抵當權을가진者는前項에依한補償金에對하여도 그權利를行使할수있다 但支拂前에押留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第二十六條(受益者負擔) ①國家는保安林의指定으로因하여利益을받는 地方自治團體其他受益者로하여

금그받는利益의限度內에서前條의規定에依하여補償하여야할金額의全部또는一部를負擔하게할수있다
 ②前項의規定에依한負擔金を農林部令의定하는期限內에納付하지아니할때에는國稅徵收法에依한滯納處分の例에依하여徵收할수있다

第二十七條(造林 또는 復權命令)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第二十二條와第二十四條第一項의 規定에違反한者에對하여造林其他原狀回復에必要한措置를命할수있다

②前項의命令을받은者가그命令에違反하였을때에서을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山林契 또는 山林組合으로 하여금이를代行하게하고그費用을前項의命令을받은者에게負擔시킬수있다

③前項의費用은國稅徵收法에依한滯納處分の例에依하여徵收할수있다

第二十八條(山林의買收 또는 交換) ①農林部長官은第十八條의目的을達成하기爲하여必要할때에는國家가當該山林을買收하거나國家가所有하는다른山林과交換하는措置를取할수있다

②農家の必需林産物の自給自足を爲하여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도前項의規定을準用한다

③第二十五條의規定은本條의境遇에이를準用한다

第二節 採種林

第二十九條(採種林의指定) ①農林部長官은優良한造林用種子를採取하기爲하여必要한山林을採種林으로

로指定할수있다

②採種林을指定하였을때에는山林所有者에게通知함과同時에이를告示하여야한다

第三十條(採種林의管理) ①農林部長官은採種林의管理上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管理人을指定할수있다

②農林部長官은採種林의所有者또는管理人에對하여採種林의保護、管理、施業種子의採取또는分配에關하여必要한事項을命할수있다

第三十一條(採種林의解除) 農林部長官은第二十九條第一項의規定에依하여指定한山林이採種林으로存置할必要가없다고認定할때에는遲滯없이指定을解除하고그事實을山林所有者에게通知하고이를告示하여야한다

第三十二條(準用規定) 採種林에關하여는第二十四條와第二十五條의規定을準用한다

第四章 國有林

第一節 國有林의 管理와 經營

第三十三條(國有林의 種類) ① 國有林은 다음 二種類로 區分한다

- 一、要存國有林、國土保安、山林經營 또는 學術研究 其他 公益上 國有로 保存할 必要가 있는 山林
- 二、不要存國有林、前號에 屬하지 않는 山林

② 前項의 國有林의 種類區分은 農林部長官이 決定한다

第三十四條(國有林의 管理 또는 處分機關) ① 農林部長官은 國有林을 管理 또는 處分한다 但 國有財産法第

四條 第二項에 該當하는 國有林으로서 同法 第九條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管理廳에 屬하는 것은 例外로 한다

② 前項 但書의 國有林이 要存林인 境遇에 管理廳이 그 用途를 廢止하였을 때에는 當該 管理廳은 遲滯없이 이를 農林部長官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三十五條(國有林의 營林計劃) 農林部長官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有林의 營林計劃을 作成하여야 한다

第三十六條(現地住民의 連帶保護) 農林部長官은 國有林의 保護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現地住民으로서 尙하야 一定한 區域을 定하여 國有林을 連帶保護하게 하고 그에 對한 報酬로서 그 產物의 一部를 讓與할 수 있다

第二節 國有林의 貸付와 產物 賣却

第三十七條(國有林의 貸付) ① 農林部長官은 다음各號의 境遇에 限하여 國有林의 貸付 또는 使用을 許可할 수

있다

一、公共用 또는 公益事業을 爲하여 必要할 때

二、牧畜、造林 또는 鑛業을 爲하여 必要할 때

三、産業施設을 爲하여 必要할 때

四、國有林產物을 賣却 받은 者가 그 產物을 採取 加工 또는 運搬하는 施設을 架設하기 爲하여 必要할 때

五、特別한 緣故가 있는 者가 造林을 目的으로 貸付를 願할 때

② 農林部長官은 前項第一號 第四號 및 第五號의 境遇에는 無償으로 貸付를 할 수 있다

第三十八條(產物의 歸屬) ① 國有林의 借受人은 許可條項에 明示된 產物以外는 收得하지 못한다

② 造林의 目的으로 國有林을 貸付한 境遇에는 그 山林의 天然雜樹는 借受人의 所有가 된다 但 閣令의 定하는 外에 依하여 農林部長官이 成林한 것으로 認定할 때까지는 伐採할 수 없다

③ 第九條의 規定은 本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三十九條(權利移轉의 制限) 國有林의 借受人은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山林을 轉貸하거나 그 權利를 讓渡 또는 擔保로 提供하지 못한다

第四十條(貸付取消의事由) ①農林部長官은 다음各號의 一에該當하는境遇에는 貸付를取消하여 貸付山林의全部 또는 一部를返還시킬수있다

一、指定期間內에 貸付料를納付하지아니할때

二、牧畜、造林 또는 鑛業을爲하여 貸付한境遇에 事業이 進捗되지아니하였거나 成功할可望이없다고 認定될때

三、法令 또는 契約에서 定한事項에 違反할때

四、詐僞의 方法으로 貸付를받은때

五、錯誤로 因하여 貸付한때

六、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을爲하여 特別必要하다고 認定할때

②前項第一號乃至第四號에 依하여 貸付山林의 返還을命할때에는 借受人에 對하여 그 貸付山林으로부터인 不當利得의 返還 또는 工作物의 除去其他原狀回復을爲하여 必要한 措置를命할수있다

③第一項第一號、第五號 또는 第六號에 依하여 貸付를取消할때에는 借受人의 收益과 貸付料를參酌하여 關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貸付料의全部 또는 一部를返還할수있다

第四十一條(貸付山林의讓與) ①農林部長官은 造林의 目的으로 國有林의 貸付를받은者에 對하여 그 事業이 成功하였을境遇에는 關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그 山林을無償으로讓與할수있다

②前項의規定에依하여讓與를 받은者가讓與條件에違反하였을境遇에는이를返還시킬수있다

第四十二條(產物의無償讓與) 農林部長官은非常한災害가있는境遇에그災害를豫防、防禦 또는그災害를復舊하기爲하여資料를供給하거나그罹災者에게建築修繕의材料 또는 燃料를供給하기爲하여必要한때에는國有林의產物을無償으로讓與할수있다

第四十三條(產物의賣却) 農林部長官은다음各號의境遇에限하여隨意契約으로國有林의產物을賣却할수있다

一、公用 또는公益事業을爲하여必要할때

二、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特別한緣故가있는國有林產物을그緣故者에게賣却할때

三、競爭入札에부치면國有林經營上障害가생길念慮가있는境遇에그產物을 農林部長官이定한資格을가

진者에게賣却할때

四、國有林產物의質受人에게그產物의搬出其他作業上必要한產物을賣却할때

第四十四條(年期賣却) ①農林部長官은다음各號의境遇에는一定한區域의國有林產物을그種類와數量을

指定하여十年以內的期間에每年分割引渡하는方法에依하여年期賣却에부칠수있다

一、特別한設備을하지아니하면產物의利用이困難할때

二、特別한設備을하는境遇에는產物의利用程度를顯著히增進시킬수있을때

②年期賣却을받은者가事業計劃을變更하였을때에는農林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한다 但設備의變更에

對하여는農林部長官의許可를받아야한다

第四十五條(處分の禁止) ①國有林 또는 그產物의買受人은賣却物件의引渡證 또는 採取의許可를받지 아니하고는 그物件에對하여處分하지 못한다

②引渡證과採取許可에關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③國有林產物의買受人은農林部長官의許可를받지 아니하고는 이를搬出하거나採取未畢의產物 또는 年期賣却契約에依하여 생긴權利를讓渡하거나擔保로提供하지 못한다

第四十六條(權利의拋棄) 國有林產物의買受人은指定期間內에搬出 또는 採取를 畢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權利를拋棄한 것으로看做한다 但天災地變其他特別한事由로因하여農林部長官의許可를얻은 때에는 例外로한다

第四十七條(契約의解除) ①農林部長官은 다음各號의 一에該當하는境遇에는 國有林野 또는 그產物의賣却契約을解除할 수 있다

一、指定期間內에賣却代金を納付하지 아니할 때
二、買收人이法令 또는 契約上의義務에違反할 때

②前項의規定에依하여契約을解除하였을 때에는 契約保證金과 既納된代金은國家에歸屬한다

第四十八條(土石採取許可) 國有林에서 石材、泥炭、粘土等의 土石을採取하고자 하는 者는閣令의定하는 바에依하여農林部長官의許可를받아야한다

第五章 山林의 保護

第四十九條(濫伐에 對한 豫防) ① 林產物을 伐採하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에 使用하는 記號 印章

을 行政官廳에 申告하고 林產物의 搬出前에 반드시 이를 標識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伐採者가 아니라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된 記號 印章과 同一하거나 類似한 記號 印章을 使用하지 못한다

③ 山林을 圍束하는 權限이 있는 公務員은 前二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 林產物의 搬出을 停止시킬 수 있다

④ 林產物에 關한 營業者는 그 產物의 出處 種類 數量과 供給相對方을 明記한 帳簿를 備置하여야 하며 山林을 圍束하는 權限이 있는 公務員은 隨時로 이를 檢査할 수 있다

第五十條(山火豫防等) ① 山林에서 焚火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山林 또는 山林에 近接한 土地에 入火하지 못한다

② 入火의 許可를 받은 者가 入火하고자 할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미리 山火를 豫防하는 施設을 設備하고 近接한 山林의 所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山火豫防上 必要하다 고 認定할 때에는 山林所有者에 對하여 山火豫防線의 施設을 命할 수 있다

④ 山火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山林을 團束하는 權限이 있는 公務員은 山林所有者와 現地住民에게 山火消防을 爲한 動員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五十一條(害虫의 驅除豫防) ① 山林에 害虫이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念慮가 있을 때 또는 山林에 病菌이 蔓延

되었을 때에는 그 山林所有者는 이를 驅除豫防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必要할 때에는 山林所有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서 山林의 害虫과 病菌을 驅除豫防할 수 있다

③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山林에 害虫 또는 病菌이 蔓延하였거나 蔓延할 念慮가 있을 때에는 利害關係가 있는 山林所有者 또는 山林契에 對하여 이를 驅除豫防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④ 前各項의 規定은 害虫以外의 動物의 害를 驅除豫防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⑤ 前二項의 規定에 依한 驅除豫防의 費用은 그 利害關係가 있는 山林의 面積 또는 地價의 比率에 따라 山林所有者가 擔當한다

⑥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確定된 分擔金은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다

第五十二條(補助金) 前二條의 規定에 依한 費用에 對하여는 그 全部 또는 一部를 國家에서 補助할 수 있다

第六章 山林契、山林組合、山林組合聯合會

第一節 總 則

第五十三條(法人格) ①本法에 依하여 設立되는 山林契(以下契라 한다) 山林組合(以下組合이라 한다)과

山林組合聯合會(以下聯合會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②契、組合、聯合會에 關하여는 本章의 規定外에 民法의 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五十四條(類似名稱使用禁止) 本法에 依하여 設立된 契 組合 또는 聯合會가 아니면 그 名稱中에 山林契、

山林組合、山林組合聯合會 또는 이에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五十五條(免稅) 契、組合 또는 聯合會의 業務外 財産에 對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稅金과 賦課

金을 免除한다 但 關稅와 物品稅는 例外로 한다

第五十六條(監督) ①契、組合과 聯合會는 農林部長官이 監督한다

②前項의 監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二節 山 林 契

第五十七條(目的과 地域) ①契는 山林所有者外 現地住民이 協助하여 造林事業의 適確한 成果를 期함을 目的

으로 한다

② 契의區域은里洞의區域으로 한다 但里洞의區域으로組織함이不適當한境遇에는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の承認을얻어따로區域을定할수있다

③ 同一地域內에二個以上の契는設立할수없다

第五十八條(業務)契는그目的을達成하기爲하여定款의定하는바에 依하여다음業務의全部또는一部를行한다

一、自律的인山林保護와造林施業에關한業務

二、本法또는本法에依據한命令에依한業務와 營林計劃施行上の必要에依하여實行하는共同施業에關한業務

三、契員의委託業務

四、其他山林에關한契員의共同利益을增進하기爲한業務

第五十九條(受益分配契約) 契는山林所有者와受益을分配할條件으로 閣令의定하는바에 依하여山林의管理、造林其他施業을爲하여一定한期間을定하여契約을締結할수있다

第六十條(契員) ① 契는 그區域內에所하는山林의所有者와 그區域內에居住하는家口主를契員으로하여構成한다但閣令또는定款의定하는바에 依하여加入資格이없는者는例外로한다

② 契員은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經費또는勞力を負擔한다

第六十一條(設立) ① 契를設立하고자할 때에는 前條에規定한契員이될資格을가지고있는者三十人以上이

發起人이되어定款을作成하여서을特別市長또는道知事의認可를받아야한다

② 前項의境遇에는契의區域內의二分의一以上에相當하는山林面積을所有하는者의同意와 그區域內에居住하는家口主의半數以上の加入同意를얻어야한다

③ 契는第六十四條第一項에依한登記를함으로써成立한다

第六十二條(設立勸獎) 農林部長官은山林行政上必要하다고認定할 때에는 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契員이될資格을가지고있는者에對하여契의設立을勸獎한다

第六十三條(定款記載事項) ① 契의定款에는다음各號의事項을記載하여야한다

一、目 的

二、名 稱

三、區 域

四、事務所의所在地

五、構成員의加入脫退에關한規定

六、費用負擔에關한規定

七、業務에 關한 規定

八、總會其他機關에 關한 規定

九、解散에 關한 規定

② 契의 定款에 是查千圓以下의 過怠料를 徵收하는 規定을 得을 수 있다

③ 定款의 變更은 主務官廳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그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第六十四條(登記) ① 契는 그 設立認可가 있는 날로부터 三十日內에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一、前條第一號乃至第四號에 掲記한 事項

二、設立認可의 年月日

三、任員의 姓名住所

② 前項의 事項中 變更이 生졌을 때에는 三十日內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登記한 後가 아니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六十五條(總會) ① 契의 事務는 本法 또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任員에게 委任된 事項以外의 總會의 決

議에 依하여야 한다

②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③總會는契長이召集하고契員過半數의出席으로開議한다

④總會의議決은出席契員過半數의贊成으로써行하되議長은表決權을 가지며可否同數인 때에는決定權을 가진다

⑤契員의議決權은一人當一票로한다

⑥契員은同居의家族또는다른契員을代理人으로하여議決權을行使할수있다 但이境遇에代理人이代理할수있는契員의數는一人에限한다

第六十六條(總代會) ①契員이二百人을超過하는契는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總會를代身할總代會를둘수있다

②總會에關한規定은前項의總代會에이를準用한다

第六十七條(幹事會) ①幹事會는契長、副契長과幹事로써構成하여契長이이를召集하며總會의議決에依據하여業務執行에關한事項을議決한다

②幹事會는構成員定數의過半數의出席으로開議하고出席員過半數의贊成으로써議決하되議長은表決權을 갖이고可否同數인 때에는決定權을 갖인다

第六十八條(任員) ①契에다음의任員을둔다

一、契長 一、人

二、副契長 一、人

三、幹事 若干人

四、監事 一、人

② 契長、副契長、幹事の監事は名譽職으로하고總會에서契員中에서選任한다

③ 契長 副契長과幹事は그契의監事나職員을兼하지못하며監事は그契의職員을兼하지못한다

④ 公務員 또는契의事務와實質的으로競爭關係에 있는事業을經營하거나이에從事하는者는契의任員 또는

職員이될수없다

第六十九條(任員의任期) ① 契長、副契長과幹事の任期는二年으로하고監事の任期는一年으로한다

② 契長、副契長과幹事が法令、定款、總會 또는幹事會의決議에 違反한 때에는언제든지總會의決議로써解任할수있다

第七十條(任員의職務) ① 契長은契를代表하여業務를統理하고總會 또는幹事會의議長이된다

② 副契長은契長을補佐하며契長이事故가 있을 때 또는闕位된 때에는그職務를代行한다

③ 幹事は契長과副契長을補佐하여業務를執行하고契長과副契長이 모두事故가 있을 때에는契長이指定한幹事が그職務를代行한다

④ 監事は契의財産과業務執行狀況을監査하여總會에報告한다

第七十一條(解散) ①契는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하는事由로 因하여 解散한다

一、定款에서 規定한 解散事由의 發生

二、總會의 議決

三、合併 또는 分割

四、農林部長官의 解散命令

②契가 解散할 때에는 定款의 規定 또는 總會의 議決에 依하여 清算하여야 한다

第三節 山林組合

第七十二條(目的 區域과 組合員) ①組合은 契의 業務의 圓滑한 運營을 圖謀하며 그 健全한 發展을 期함을 目的

으로 한다

②組合의 區域은 市、郡、區의 區域으로 한다 但第五十七條第二項 但書 및 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組合은 區域內에 事務所를 가진 契를 組合員으로 한다

第七十三條(設立) ①組合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十個以上の 契가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作成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區域內에 設立된 契의 過半數의 加入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組合은事務所의所在地에서登記를함으로써成立한다

第七十四條(組合員의責任) 組合員은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經費또는勞力을負擔한다

第七十五條(業務) 組合은그目的을達成하기爲하여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다음各號의業務의全部또는一部를行한다

一、 契의그構成員이行하는山林施業의調整과그區域內山林의施業上必要한共同施設에關한業務

二、 契의業務活動을助長하기爲하여必要한業務

三、 監督官廳또는聯合會가指示하는業務

第七十六條(借入金과그運營) ① 組合은前條의事業目的을達成하기爲하여必要한資金을借入할수있다

② 前項의借入金과그運營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第七十七條(任員) ① 組合에組合長 理事 常務理事와監事를둔다

② 組合長、理事와監事는名譽職으로한다

③ 組合長과監事는總會에서契員中에서選任한다

④ 理事는總會에서契의幹事中에서選任한다

⑤ 常務理事는總會의同意를얻어組合長이任命한다

第七十八條(代理人에關한制限) ① 組合員은그權利行使에關하여組合員이아니면代理人으로選任하지못

한다

②第六十五條第六項但書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이를準用한다

第七十九條(理事會) ①理事會는組合長理事와常務理事로써 構成하며組合長이 이를召集한다

②다음各號의事項은理事會의議決를얻어야한다

一、業務에關한契約과그變更

二、豫算案과決算

三、定款의變更

四、職員의任命

五、其他重要한事項

第八十條(準用規定) 第二節의契에關한規定은本節의組合에關한規定에抵觸되는것을除外하고는 組合에準用한다 但그規定中契、契員、幹事會、契長、幹事라함은이를各各組合、組合員、理事會、組合長、理事로看做한다

第四節 山林組合聯合會

第八十一條(目的、區域과會員) ①聯合會는組合의業務를指導監督하며그共同利益의 增進을圖謀함을目

的으로한다

② 聯合會는事務所를서울特別市에두고그業務區域은全國으로한다

③ 聯合會는서울特別市와道에支部를들수있다

④ 聯合會는組合을會員으로한다

第八十二條(設立) ① 聯合會를設立하고자할때에는五〇個以上の組合이發起人이되어定款을作成하여

林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한다

第八十三條(定款記載事項) ① 聯合會의定款에는다음各號의事項을記載하여야한다

一、目的 名稱과區域

二、事務所의所在地

三、會員의加入과脫退에關한事項

四、會員의權利義務에關한事項

五、總會其他機關에關한事項

六、財産과監査에關한事項

七、任員과理事會에關한事項

八、事務執行에關한事項

九、定款의變更에關한事項

十、存立時期 또는解散의事由를定한 때에는 그時期 또는事由

②前項의記載 事項의變更은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지 아니하면 그效力을發生하지 아니한다

第八十四條(登記) ①聯合會는 그設立認可가 있는 날로부터三週日內에主事務所와分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各號의事項을登記하여야 한다

一、前條第一項第一號、第二號와第十號에揭記한事項

二、設立認可의年月日

三、會長、副會長、理事와監事의姓名、住所、

②前項의事項中變更이 있을 때에는三週日內에各事務所의所在地에서登記하여야 한다

第八十五條(會員의責任) 聯合會의會員은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經費를負擔한다

第八十六條(業務) 聯合會는 그目的을達成하기爲하여 다음各號의業務의全部 또는一部를行한다

一、組合의共同目的을達成하기爲한業務

二、會員에對한補助金交付에關한業務

三、監督官廳이指示하는業務

四、前各號의附帶業務

五、其他聯合會의 目的 達成을 爲하여 必要한 業務로서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業務

第八十七條(總會) ①總會는 會長、副會長、理事와 會員으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法令、定款

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聯合會의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②總會에서 會員은 다른 會員을 代理할 수 없다

第八十八條(理事會) 理事會는 會長副會長과 理事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法令、定款과 總會의

決議에 依據하여 業務執行에 關한 事項을 議決한다

第八十九條(任員) ①聯合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一、會長 一人

二、副會長 一人

三、理事三人以上七人以內

四、監事 二人

②會長과 副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여 農林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理事와 監事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第九十條(任員의 任期와 職務) ①會長、副會長、理事의 任期는 三年、監事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②會長은 聯合會를 代表하여 그 業務를 統理하고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③ 副會長은會長을補佐하며會長이事故가 있을때 또는闕位된때에는그職務를代行한다

④ 理事는會長、副會長을補佐하며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業務를執行하고會長、副會長이 모두事故가 있을때에는會長이指定한順位로理事가그職務를代行한다

第九十一條(借入金) 聯合會가第八十六條의規定에依한業務를行하기爲하여必要한資金을借入하고자할 때에는第七十六條의規定에準用한다

第九十二條(準用規定) 第二節의契에關한規定은本節의聯合會에關한規定에低觸되는것을除外하고는聯合會에이를準用한다 但그規定中契、契員、契長、副契長、幹事、幹事會라함은이를各各聯合會、會員、會長、副會長、理事、理事會로看做한다

第七章 罰 則

第九十三條(山林竊盜罪) ①山林에서 그產物을竊取한자는六年以下の懲役또는六十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

②前項의未遂犯은處罰한다

第九十四條(特殊山林竊盜罪) ①前條의罪를犯한者가다음各號의一에該當한때에는十年以下の懲役に處한다

但五十萬圓以下の罰金を併科할수있다

一、根株를採掘하거나其他方法으로山林을大規模로毀損또는燒燬하는行爲를할때

二、贓物을運搬하기爲하여牛、馬、船舶、車輛또는짐매를使用하거나運搬、造材의設備를할때

三、保安林、保護林區、採種林또는砂防地에서犯한때

四、山林產物採取의權利를行使하는機會를利用하여犯한때

五、常習으로前條의罪를犯한때

六、證據物로서領置시킨贓物을隱匿、消費其他方法으로滅失한때

七、夜間에犯한때

第九十五條(山林公務員의犯罪) 山林에關한業務에從事하는公務員또는契、組合、聯合會의任員이나職

員이前二條의罪를犯한때에는十五年以下の懲役に處한다

第九十六條(山林損毀罪其他) 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자는六月以下の懲役또는五萬圓以下の罰金에處

한다

一、自己所有의山林또는山林에對하여管理使用受益의權利가있는者로서 本法에違反하여山林을伐採한者

二、立木竹、木材또는根株에붙인他人의記號、印章을變更또는削除한者

三、正當한理由없이他人의山林內에工作物を設置한者

四、正當한理由없이他人의山林을開墾한者

五、第十四條、第二十二條또는第二十四條第一項의規定에違反한者 但第二十七條의規定에依한原狀回復命令을履行한者에對하여는刑을減免한다

六、第四十八條와第五條第一項의規定에違反한者

第九十七條(山林放火罪) ①他人의山林또는保安林、保護林區에編入된山林또는採種林에放火한者는三

年以上의有期懲役に處한다

②前項의境遇에主產物を燒散하였을때에는五年以上の有期懲役に處한다

③自己의山林에放火한자는七年以下の懲役또는七十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

④前項의 境遇에 他人의 山林의 産物을 燒散한 때에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⑤第一項과 第三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九十八條(山林失火罪) ①過失로 因하여 前條第一項의 山林을 燒散한 자는 三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山林을 燒散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자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九十九條(罰金)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자는 三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山林을 爲하여 設置된 標識을 移轉、汚損 또는 毀壞한 자로서 遲滯없이 그 原狀을 回復하지 아니한 자

二、第十條、第三十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違反한 자

三、本法에 依하여 許可 또는 認可를 받아야 할 境遇에 그 許可 또는 認可를 받지 아니한 자

四、本法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할 境遇에 登記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正한 登記를 한 자

五、本法에 依한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자

六、第五十四條의 規定에 違反한 자

附 則

第一條(施行日) 本法은 西紀一九六二年一月二十日부터 施行한다

第二條(廢止法令) 本法 施行當時의 森林令、朝鮮國有森林未墾地 및 森林產物 特別處分令、國有林產物

朝鮮에 施行하는 데 關한件、朝鮮特別綠故森林讓與令、朝鮮國有林野部分林令、國有土石採取規則山

林保護臨時措置法、私有林野施業制限規則 및 松蟲驅除豫防規則은 이를廢止한다

第三條(保安林、保護林區의存續) 本法施行當時에保安林 또는 保護林區인 것은 本法에 依하여 指定된 保安

林 또는 設定된 保護林區로 看做한다

第四條(部分林의廢止) 本法施行前에 設定된 部分林은 이를廢止하고 그處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

로 定한다

第五條(貸付의存續) 從前의 法令에 依한 國有林의 貸付、使用 또는 그產物의 賣却은 本法에 依한 貸付、使用、

또는 賣却으로 看做한다

第六條(從前團體에對한措置) ① 本法施行當時에 山林保護臨時措置法 第四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

된 山林契는 本法에 依하여 設立된 山林契로 看做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山林契는 本法施行後 六十日內에 第六十四條第一項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但本項의

登記에 必要한 手數料는 이를 免除한다

③ 從前의 山林組合과 山林組合聯合會의 業務와 財産은 本法에 依하여 設立된 山林組合 山林組合聯合會가 引受하여 清算한다

④ 前項에 依하여 引受한 財産의 價格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決定한다

⑤ 第三項의 規定에 依하여 引受한 財産에 對하여는 登錄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七條(行政措置 또는 處分의 實施) 本法中山林基本計劃、營林計劃과 이에 關聯된 行政上의 措置 또는 處分은 山林實態調查를 完了한 後에 이를 實施한다

第八條(初代任員의 任命) ① 大韓山林組合聯合會의 會長、副會長 및 各市、郡山林組合長은 農林部長官이 任命한다

② 前項의 初代聯合會長、副會長 및 各市、郡山林組合長의 任期는 定期總會에서 會長、副會長 및 組合長이 選出 및 認准될 때 까지 로 한다

狩

獵

法

四
三

여 백

狩 獵 法 (西紀一九六一年十二月二十一日)
法 律 第 九 四 九 號

第一章 總 則

第一條(目的) 本法은狩獵에關한事項을規定하므로써野生鳥獸의保護蕃殖과그適正利用을期하며아울러危險을未然에防止함을目的으로한다

第二條(定義) ①本法에서狩獵이라함은閣令으로定하는獵具의方法에依하여野生鳥獸를捕獲하는行爲를말한다

②本法에서蕃獵鳥獸라함은狩獵이許容된鳥獸를말한다

③本法에서保護鳥獸라함은狩獵鳥獸以外の野生鳥獸를말한다

第二章 鳥獸의 保護 및 獵區

第三條(鳥獸의 保護) ① 保護鳥獸는 이를 狩獵하지 못한다

② 鳥獸의 알(卵) 새끼 및 짐은 이를 採取하지 못한다

第四條(狩獵鳥獸) ① 狩獵鳥獸의 種類는 農林部長官이 定한다

② 狩獵鳥獸 免許를 받은 者가 아니면 이를 捕獲하지 못한다

③ 農林部長官은 鳥獸의 保護 蕃殖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捕獲物의 數量을 制限할 수 있다

④ 農林部長官은 狩獵鳥獸의 種類를 決定하거나 捕獲物의 數量을 制限하고 저할 때에는 鳥獸에 對한 學識 經驗을 가진 者나 鳥獸의 保護, 蕃殖과 狩獵을 爲하여 組織된 團體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五條(保護區 및 禁獵區) ① 農林部長官은 鳥獸의 保護 蕃殖과 捕獲 制限 또는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一定

한 區域을 定하여 保護區 또는 禁獵區를 設定할 수 있다

② 다음 의 場所에서는 狩獵을 하지 못한다

一、道 路

二、公園 遊園地 其他 이와 類似한 場所

三、陵墓、祠廟、寺刹 또는 教會等의 境內 및 이와 類似한 場所

③ 農林部長官은 第一項의 目的이 達成되었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六條(獵區) ① 農林部長官은 狩獵鳥獸의 捕獲을 調整하기爲하여 獵區를 設定할 수 있다

② 農林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獵區의 管理에 關한 事務를 鳥獸의 保護蕃殖과 狩獵을爲하여 組織된 團體에 委任할 수 있다

第七條(銃獵禁止區) 農林部長官은 危險防止 및 其他의 必要에 依하여 銃獵禁止區域을 設定할 수 있다

第八條(意見聽取와 告示) ① 農林部長官이 前三條에 依하여 保護區、禁獵區、獵區 또는 銃獵禁止區를 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鳥獸에 對한 學識經驗을 가진 者나 鳥獸의 保護蕃殖과 狩獵을爲하여 組織된 團體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② 農林部長官이 前三條에 依하여 保護區、禁獵區、獵區 또는 銃獵禁止區를 設定할 때에는 그 名稱과 區域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三章 狩獵免許

第九條(狩獵期間) ①狩獵期間은十月一日부터翌年三月三十一日까지로한다 但特別免許狀所持者의狩

獵期間은따로農林部長官이定한다

②農林部長官은特殊한狩獵鳥獸의保護蕃殖을爲하여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前項의期間을短縮할수있다.

第十條(狩獵免許) ①狩獵免許(以下免許라한다)를받고자하는者는農林部長官이定하는書類를具備하여住所地를管轄하는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에게申請하여免許狀을交付받아야한다

②免許狀은他人으로하여금이를利用하게하지못한다.

第十一條(免許狀) ①免許狀은甲種、乙種、特別의三種으로한다

②甲種免許狀은銃器以外의方法으로狩獵을하는者에게、乙種免許狀은銃器를使用하여特定種類의野生獸類를狩獵하는者에게、特別免許狀은藥用材料採取를爲하여銃器를使用하여狩獵하는者에게交付한다

③다음의事項에關하여는農林部長官이定한다

一、免許狀의有效期間

二、住所、其他免許狀에記載된事項의改書

三、免許狀을亡失또는毀損한境遇의措處

四、免許狀의返納節次

第十二條(免許의制限) 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者에對하여는免許를할수없다

一、未成年者

二、白痴또는瘋癲者의禁治産者

三、身體上또는精神上의缺陷으로因하여狩獵銃器를確實히取扱할能力이없다고認定되는者

四、本法또는本法에依한命令에違反하여罰金以上の刑을받고그刑의執行이終了되거나執行을받지아하기로確定된後二年을經過하지아니한者

第十三條(講習會) ①農林部長官은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로하여금그管內에

居住하는免許對象者에게狩獵에關한法令과鳥獸의判別및獵具取扱에對한講習을하게할수있다

②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는前項의受講을받지아니한者에게免許를拒否할수있다

第十四條(免許의取消) ①免許를받은者가第十二條各號의一에該當되는때에는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는即時그免許를取消하여야한다

②免許를받은者가本法또는本法에依한命令에違反한때에는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는그免許를取消할

수있다.

第十五條(免許의效力喪失) 免許를 받은者가本法 또는本法에依한命令에違反하여 罰金以上의刑을 받은때

에는그免許의效力이喪失된다

第十六條(制限禁止의解除) ①學術研究有害鳥獸의驅除 또는其他特別한目的을爲하여鳥獸를捕獲하거나

그집, 알, 새끼를採取하고자할 때에는捕獲 또는採取를하고자하는地域을管轄하는서울特別市長 또는道
知事에게申請하여本法 또는本法에依한命令의制限과禁止를解除하는許可를 얻어야 한다

②서울特別市長 또는道知事는前項의規定에依한許可를 할 때에는捕獲 또는採取를 하려는鳥獸의種類、數
量、地域、期間、方法等を表示하여 미리農林部長官의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서울特別市長 또는道知事が第一項의規定에依한許可를 할 때에는許可證을交付한다

④許可證은他人으로하여금이를使用하게 하지 못한다

第十七條(免許手數料) ①第十條의規定에依하여免許를 얻은者는免許手數料를納付하여야 한다

②免許狀의再交付를 받는者에게도前項의規定을準用한다

③種類別免許手數料는閣令으로定한다

④第十六條의規定에依하여許可를 얻은境遇에는手數料를 받지 아니한다

第四章 危險防止

第十八條(銃獵制限) 다음의各號의一에該當하는銃獵은하지못한다

一、市街地其他人家附近이나사람이集合하는場所에서의銃獵

二、日出前과日沒後의銃獵

三、進行中인車馬、航空機에서의銃獵

四、銃彈이到達할憂慮가있는人畜、建物、汽車、電車、自動車、艦船또는航空機를向한銃獵

第十九條(危險한方法에依한捕獲禁止) 爆發物、劇藥、毒藥、掘、陷弄等危險한方法으로써 鳥獸의捕獲

을하지못한다

第五章 管 理

第二十條(他人의 占有地內의 狩獵制限)을 타리가 設치되어 있거나 農作物이 심어 있는 他人의 占有地內에서는 占有者의 承諾없이 狩獵을 하지 못한다

第二十一條(入獵規則) 獵區에의 入獵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命令으로 定한다

第二十二條(賣買目的의 飼養) 賣買을 目的으로 野生鳥獸를 飼養하는 者는 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二十三條(鳥獸의 人工蕃殖) 農林部長官은 特産鳥獸나 有益鳥獸가 滅種할 虞가 있을 때 또는 其他 必要하다 고 認定할 때에는 人工蕃殖에 必要한 機關을 주어 種鳥獸를 人工蕃殖하여 林野에 增殖하게 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野生鳥獸의 輸出) 野生鳥獸 또는 野生鳥獸의 알, 새끼와 그 剝製品 또는 그 加工品의 輸入을 하

고자 하는 者는 住所地를 管轄하는 市 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를 經由하여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二十五條(本法違反 捕獲物의 讓渡禁止)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하여 捕獲한 鳥獸와 採取한 鳥獸

의 알, 새끼 또는 皮는 讓渡하거나 讓受하지 못한다

第二十六條(特殊目的에 依한 捕獲物의 讓渡制限) 第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얻어 捕獲한 鳥獸와 採取한

鳥獸의 알 또는 새끼는 이를讓渡하거나讓受하지 못한다

第二十七條(免許狀의 檢査等) ①警察 또는 山林關係公務員은免許狀、捕獲鳥獸、餉養、 또는 贖買하는鳥

獸、 또는 그 알、 새끼、 卵等を調査할 수 있다

② 出獵을 하는 때에는免許狀 또는 許可證을 携帶하여야 한다

第六章 罰 則

第二十八條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一年以下의 懲役 또는 十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第四條第二項、第五條第二項、第十八條、第十九條 또는 第二十四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二、虛偽의 手段으로 狩獵免許를 받거나 第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얻은 者

第二十九條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一、第三條、第九條、第二十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但 第二十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占有者의 告訴가 있을 때에 罰한다

二、第四條第三項의 規定에 依한 制限에 違反한 者

三、第十條第三項의 規定에 依한 規定에 違反한 者

四、第九條第二項 또는 第十六條第四項에 違反하여 免許狀 또는 許可證을 他人에게 빌려 준 者와 빌린 者

五、第二十一條의 規定에 依한 入獵規則에 違反한 者와 第二十二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六、第三十七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正常한 事由가 있어 拒絕한 者

七、鳥獸保護區、禁獵區、獵區等의 標識을 除去한 者

附 則

第一條(施行日) 本法의 施行日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二條(廢止法令) 西紀一九二一年 朝鮮總督府令第四十六號 狩獵規則은 이를 廢止한다

第三條(經過規定) 本法 施行以前의 法令에 依하여 設置된 禁獵區와 獵區는 本法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看做

한다

여 백

砂防事業法

여 백

砂防事業法

第一章 總 則

第一條(目的) 本法은 國土의 荒廢化를 防止하고 이를 保全하여 公共利益의 增進과 産業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定義) ①本法에서 砂防事業이라 함은 土地의 崩壞、土砂의 流出 및 飛砂를 防止하기爲하여 工作하거나 植物을 播植함을 말하며 砂防施設이라 함은 砂防事業에 依하여 設置한 工作物 其他의 施設과 播植한 植物을 말하고 砂防地라 함은 砂防事業施行地를 말한다

② 砂防地에 天然의 生立한 植物과 砂防施行前부터 그 土地에 生立한 植物로서 砂防施設인 植物과 함께 生育하는 것은 이를 砂防施設로 본다

第三條(砂防地의 指定) 砂防事業을 施行하는 土地는 農林部長官이 指定한다

第四條(砂防事業의 施行) ① 砂防事業은 國家가 施行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私人是 農林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砂防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恒天災地變

其他緊急을要하는事態로因하여砂防事業을施行하였을때에는即時農林部長官의事後承認을얻어야한다
 第五條(施行費用의負擔) ①前條第二項의規定에依한砂防事業施行의費用은當該施行者의負擔으로한다

②國家는前項의費用에對하여 그全部 또는一部를補助할수있다

第六條(國家가施行하는境遇) 國家가施行하는砂防事業은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農林部長官또는

特別市長、道知事가이를執行한다

第七條(施行의委託) 서울特別市長또는道知事는山林法第五十三條의規定에依하여組織된山林契에委託하여砂防事業을施行하게할수있다

第二章 管 理

第八條 (砂防地所有者의義務) 第三條의規定에依하여指定된土地의所有者其他關係人은그土地에서砂防事業施行者가砂防工事를施行하거나砂防施設을管理하는것을拒否할수없다.

第九條 (公務員의調査行爲等) ①砂防事業을爲하여必要할때에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農林部長官또는서울特別市長、道知事는當該公務員과從事員으로하여금他人의土地에들어가서測量또는調査에必要한施設과障害物을變更하거나除去하게할수있다

②前項의規定에依하여施設과障害物을變更하거나除去하는公務員또는從事員은그權限을表示하는證票를携帶하고關係人에게提示하여야한다

③砂防事業을爲하여必要할때에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第三條의規定에依하여指定된土地와그附近의土地를一時使用하거나그土地의形狀을變更또는그土地에서土石이나木竹芝草를採取할수있다

第十條 (損失補償) 前條의規定에依한處分으로因하여損失을받은者에對하여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砂防事業施行者가그損失을補償하여야한다

第十一條 (補償金의協議와決定) ①前條의規定에依하여補償할金額은當事者間의協議에依하여定한다

②前項의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協議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特別市長 또는道知事가 이를決定한다

第十二條(異議의申請) ①前條第二項의決定에異議가 있는者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 農林部長官에게異議를申請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前項의申請을받은날로부터一月以內에 이를處理하여야 한다

第十三條(保安林의指定) 砂防施設의保存을爲하여必要할 때에는農林部長官은山林法第十八條의規定에依하여砂防地를保安林으로指定할 수 있다

第十四條(特定行爲의禁止 또는制限) 砂防施設의保存을爲하여必要할 때에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서울特別市長 또는道知事는砂防地에서一定한行爲를禁止 또는制限할 수 있다

第十五條(砂防施設의管理) 砂防地에存在하는砂防事業을施行한者가管理한다但農林部長官은必要하다고認定할 때에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管理者를指定 또는變更할 수 있다

第三章 費用負擔과 收入

第十六條(管理費用의負擔) ① 砂防施設의 管理에 必要한 費用은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管理者가 負擔한다

② 第十八條 및 第十九條의 規定은 前項의 管理에 必要한 費用에 이를 準用한다

第十七條(收益의歸屬) 砂防施設로 부터 生기는 收益은 그 管理에 必要한 費用을 負擔하는 者의 收入으로 한다

但 農林部長官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收益者로 하여금 그 收益의 一部를 砂防地의 所有者와 占有者 또는 第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費用을 負擔하였거나 勞力、物件을 提供한 者에게 交付하게 할 수 있다

第十八條(受益者負擔) ① 農林部長官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砂防施設로 부터 利益을 받을 受益者로 하여금 그 利益의 限度內에서 砂防地 管理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하거나 砂防事業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勞力 또는 物件을 提供하게 할 수 있다

② 第十九條(原因者의負擔) 砂防事業이 아닌 다른 工事 또는 行爲로 因하여 砂防事業이 必要하게 되었을 境遇에 農林部長官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該 砂防事業에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原因이 된 工事 또는 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 負擔하게 할 수 있다

第四章 雜 則

第二十條(砂防施設의 解除) ① 農林部長官은 砂防施設이 그 目的을 達成하였다고 認定할 때에는 砂防施設을 解除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砂防施設을 解除하였을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砂防事業에 依하여 施設한 工作物을 그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交付할 수 있다

第二十一條(疏權의 委任) 農林部長官은 本法에서 規定한 그 職權의 一部를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二十二條(施行令) 本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二十三條(罰則)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六月以下의 懲役 또는 六十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第八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二、第十四條의 規定에 依한 禁止 또는 制限에 違反한 者

附 則

①(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西紀千九百三十三年八月制令第十七號朝鮮砂防事業令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規定) 本法施行當時 施行하고 있는 砂防事業은 本法에 依하여 施行하는 砂防事業으로 본다